

이행권고결정

사 건 [redacted] 보증금반환

원 고 [redacted]

주소 별지 기재와 같다.

피 고 [redacted]

주소 별지 기재와 같다.

대표이사 [redacted]

이 행 조 항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원 고

원고 소송대리인
법무법인 태유

담당변호사:

조효동

피 고

보증금반환 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1. 피고는 원고에게 1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11. 16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